

□ 질문의원 : 김덕균

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공간에 입주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임대료를 차별 두는 이유와 비영리단체에 대한 임대료 인하계획이 없는지?

( 답 변 )

-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건물 하부공간 일부에 공공단체 및 수익업체가 유·무상으로 입주해 있음.
- 체육시설내 공유재산 대부료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산정하는 바, 수익업체는 재산평정가격산정 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대부료가 결정되고, 공용·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1천분의 25, 기타 단체의 경우 1천분의 50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음.
- 그러나, 체육시설내 입주한 일부 단체가 법률에 근거 없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 유상으로 전환토록 지난 4월 내부방침을 정하여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한 바 있으며,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부료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6.25참전용사와 해병대부천시연합회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최저 요율인 1천분의 25를 적용하는 등 체육시설 임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.